

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나) 제외재산

(1) 국유재산의 경우

- 국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
  - 도시개발법(구. 토지구획정리사업법)에 의한 환지
  - 법원의 판결·조정 등에 의한 소유권 등의 변경 및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
  -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(2,000㎡미만 토지)
  -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수령
  -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
  -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매각
  -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현물출자
  - 도시재개발법 제57조에 의한 점유자 및 사용자에 대한 매각
  - 입목·죽의 매각
  - 신규등록부동산등 무주부동산의 취득
- (2) 공유재산의 경우
-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
  - 도시개발법(구. 토지구획정리사업법)에 의한 환지
  -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  -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

법에 의한 손실보상 및 환매

※ 취득·처분의 결정이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시설 결정된 예와 같이 취득·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강제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구속되므로 의회의결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임.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음.

-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
-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
-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-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·처분
-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·처분
-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·처분
- 지방세법에 의한 몰납
-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·처분
-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·처분

※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, 전원개발특별법 제8조 사례와 같이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경우는 의회의결 과정에서 만약 부결한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취득이나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